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82
------	-----

2019. 8. 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8월 7일, 김정태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8.3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정태 의원)

1. 제안이유

-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보다 지속가능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화조성’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자 함.

-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및 사업의 위탁,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의 구조를 체계화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2조)
-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화조성” 분야 등으로 구분 및 용어 정비(안 제4조)
-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 규정과 위원 구성의 성비 균형을 이루도록 함. (안 제9조)
- 라.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규정 신설(안 제12조)
- 마.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3조)
- 바. “장” 삽입을 통해 조례 구조 체계화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과 북한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남북교류협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의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화조성’으로 구분하며, 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남북관계 동향

-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토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의 군사 행보 재개와 대남 비난이 계속되면서 전격적으로 마련된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전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다.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의 제목을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였음.
-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단체장의 책임 하에 공고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전략과 정책 수단을 시행계획에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라. 기금의 용도 구분(안 제4조)

- 안 제4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남북기금”)의 용도를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 구분하고,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불분명한 용어를 ‘북한의 도시’로 정비하고 있음.
- 즉,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내용과 기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을 직접 당사자로 하고 있는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평화·통일 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사업은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 남북기금의 대상과 용도를 구분하고 있음.
- 서울시는 남북 도시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관련 교육과 민간단체 남북 교류사업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p> <p>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p> <p>3.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p> <p>4.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p> <p>5.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p> <p>6. 그 밖에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p>	<p>제4조(기금의 용도) ----- -----.</p> <p>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p> <p>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p> <p>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p> <p>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p> <p><삭 제></p> <p><삭 제></p>

-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유형에 맞춰 남북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분리하여 계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개정안은 기금의 사용 용도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4호)하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확대되게 됨.
- 편성과 집행에 있어 합법성과 엄격성을 요구하는 예산제도와는 달리 기금은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에서는 기금의 사용 목적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을 시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자칫 방만한 기금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안 제9조)

- 안 제9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위원의 임기와 구성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무 전문가의 확대와 함께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대동강 수질개선’,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조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실·본부·국장의 당연직위원 추가가 수반되어야 함.

현행	개정안
<p>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20명</u> 이내로 구성 한다.</p> <p>② (생략)</p> <p>③ <신설></p> <p>④ <신설></p> <p>⑤ (생략)</p>	<p>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_____ — <u>30명</u>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u></p> <p>④ <u>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⑤ (현행 제3항과 같음)</p>

- 다만,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모두 16회(2018년 9회, 2019. 8월 현재 7회) 중 12회가 서면심사로 진행돼 위원회의 자문 활동이 소극적·수동적 역할에 그치고 있으므로 위원 수 확대에 앞서 위원회 기능 수행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위원 임기는 위원회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임기 규정을 조례로 상향조정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바.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안 제12조, 안 제13조)

- 안 제1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¹⁾(2014.5.28)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13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 “민간인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²⁾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음.

1)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원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 따라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은 가능하지만³⁾,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여비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있음.
- 다만,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이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민간인 선정 기준과 절차, 서울시 사업 수행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구체적 관리·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실제로 서울시는 2015년부터 매년 민간인 국외여비를 5천만원씩 편성하였으나, 2017년까지 5.24 대북 제재 조치 등으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가 어려워 전액 불용되었으며, 2018년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149만원)이 첫 지원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월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에게 1백만원을 집행하였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의 제목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을 삽입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8조 앞에 “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삽입한다.

제9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장 총칙</p>
<p>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조(시장의 책무) ① ----- ----- ----- ----- ----- ----- ----- ----- -----.</p>
<p>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 -----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신 설></p>	<p>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 -----.</p>

현 행	개 정 안
<p>1.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p>	<p>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p>
<p>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p>	<p>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p>
<p>3.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p>	<p>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p>
<p>4.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p>	<p>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p>
<p>5.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p>	<p><삭 제></p>
<p>6. 그 밖에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p>	<p><삭 제></p>
<p><신 설></p>	<p>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p>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20명</u>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③ (생 략) <u>제9조의2</u> (생 략) <u>제10조</u> (생 략) <u><신 설></u>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 <u>30명</u> -----.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u> ④ <u>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u>제10조</u>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u>제11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 <u>제4장 보칙</u>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189 349 349 389"><신 설></p> <p data-bbox="189 685 349 725"><신 설></p>	<p data-bbox="842 349 1492 636"><u>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u></p> <p data-bbox="842 685 1492 972"><u>제13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 data-bbox="175 1021 432 1061"><u>제11조</u> (생 략)</p>	<p data-bbox="842 1021 1310 1061"><u>제14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p>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82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김정태, 권영희, 임종국,
이호대, 경만선, 김경영,
김화숙, 박순규, 송재혁,
이영실, 이정인 의원 (11명)

1. 제안이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보다 지속가능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을 요구받고 있음.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명료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화조성” 분야 등으로 구분 및 용어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근거 명확화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 근거 마련하여 서울특별시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의 구조를 체계화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2조)
-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화조성” 분야 등으로 구분 및 용어 정비(안 제4조)
-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 규정과 위원 구성의 성비 균형을 이루도록 함. (안 제9조)
- 라.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규정 신설 (안 제12조)
- 마.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3조)
- 바. “장” 삽입을 통해 조례 구조 체계화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의 제목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을 삽입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8조 앞에 “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삽입한다.

제9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 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 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 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 업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제1장 총칙</p> <p>제2조(시장의 책무) ① ----- ----- ----- ----- ----- ----- ----- ----- ----- -----</p> <p>② ----- ----- <u>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 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 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p> <p>제4조(기금의 용도) ----- -----</p>

현 행	개 정 안
<p>1.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p>	<p>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p>
<p>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p>	<p>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p>
<p>3.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p>	<p>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p>
<p>4.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p>	<p>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p>
<p>5.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p>	<p><삭 제></p>
<p>6. 그 밖에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p>	<p><삭 제></p>
<p><신 설></p>	<p>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20명</u> 이내로 구성 한다.</p> <p>②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생 략)</p> <p><u>제9조의2</u> (생 략)</p> <p><u>제10조</u>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 <u>30명</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u></p> <p>④ <u>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⑤ (현행 제3항과 같음)</p> <p><u>제10조</u> (현행 제9조의2와 같음)</p> <p><u>제11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p> <p><u>제4장 보칙</u></p> <p><u>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시장</u> <u>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172 309 327 347"><u><신 설></u></p> <p data-bbox="156 645 406 683"><u>제11조</u> (생 략)</p>	<p data-bbox="821 309 1460 593"><u>제13조</u>(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시장은 제 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 data-bbox="821 645 1284 683"><u>제14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p>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제4조(기금의 용도), 제11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제12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기 편성하여 추진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관련 조항		
		총계	15,050			
		소계	15,000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	3,000	제4조 제1호 가목·나목		
		서울-평양(경평) 축구대회 재개	2,400			
		평양 하수도 및 하수도 개량	1,000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비예산			
		평양 산림녹화 지원	213			
		서울-평양 간 동식물 교류 및 협력	255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 협력	비예산			
		평양 대중교통 운영체제 협력	비예산			
		서울-평양 문화 예술 교류	3,180			
		글로벌 도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1,000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동 추진	문화·체육·역사관광 등 사회문화교류 도시재생·교통·도로·도시안전 등 도시인프라 협력 산림·환경·동식물 등 경제개발 협력 보건의료, 재난재해 구호 등 인도적 지원	2,500	제4조 제1호 가목·나목·다목, 제11조		
		통일기반 조성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400	제4조 제2호 가목, 제11조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200	
			6·15 선언 및 10·4 기념행사 지원		300	제4조 제2호 나목, 제11조
	민관 소통 채널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40			
	민간 차원의 통일기반조성사업 지원	100				
	기타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 등	312	제4조 제4호		
		국외업무여비	50	제4조 제5호 가목		
		민간인국외여비	50	제12조		
		소계	50			
기본 경비	기금관리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비용 등 일반운영비	50	제4조 제3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81,000천원(연평균 16,2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6,2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0~2024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수가 조례 개정에 따라 10명 확대(20명→30명)됨에 따라 10명분의 운영비용(참석수당 및 업무추진경비)이 추가로 소요
- 회의 개최횟수는 2018년 연간 회의 개최횟수 9회 적용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81,000천원(연평균 16,200천원)

- 총비용 = 위원회 운영비용(10명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비용(제9조)	16,200	16,200	16,200	16,200	16,200	81,000
	소계(b)	16,200	16,200	16,200	16,200	16,200	81,000
□ 총 비용(b-a)		16,200	16,200	16,200	16,200	16,200	81,000

- 위원회 참석수당 : 수당단가 150천원 × 10명 × 연 9회 × 5년 = 67,500천원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2시간 초과 150천원 적용

- 업무추진경비 : 업무추진비단가 30천원 × 10명 × 연 9회 × 5년 = 13,500천원

※ 업무추진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이내로 가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담 당 관

조사분석팀장

예산분석관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여차민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